

『구미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1년 6월 1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6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6월 13일

제1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

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이 홍 희

나. 제안이유
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법령의 개정
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과 관련된 법률명칭과 용어를 현실에
맞게 정비하여 운용을 원활히 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,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,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등 조례에서 인용 및 적용한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지방자치법」
 - 「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
 -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
 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
 -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
 -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
 - 「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교 역

- 상위법인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,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,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,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등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육성 기금운용과 관련된 법률 명칭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운용에 원활을 기하고자 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